

	<h2 style="margin: 0;">CCTV 설치 및 운영 규칙</h2>	규정번호	3-1-28
		제정일자	2010.10.01
		개정일자	2012.04.30
		개정번호 Ver.1	총페이지 3

제1조(설치의 목적) 이 규칙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·운영 지침에 의하여 동양미래대학교(이하 “본교“라 한다)의 시설물 보호, 범죄 및 화재예방,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비밀유지의무)

- ①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자 또는 CCTV시스템을 유지·보수하면서 알게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CCTV 운영방법
- ③ CCTV 운영·관리부서 : 사무처 관리영선팀
- ④ CCTV 총괄책임자 : 사무처장
- ⑤ CCTV 운영책임자
 - 1. 관제실 (CCTV 설치·운영,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)
 - 2. 관리영선팀장 (화상정보의 수집·처리 등에 관한 업무)
- ⑥ CCTV 촬영시간 : 24시간
- ⑦ 화상정보 보유기간 : 화상정보 수집 후 자동소멸 시 까지(5일~30일 이내)
- ⑧ 화상정보 보관·관리·삭제방법 : 화상정보는 책임자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

제3조(설치 및 운영 위원회 지정)

- ① 본교의 CCTV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② 설치 및 운영위원회는 5명으로 하고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되며, 위원은 교학처장, 산학협력처장, 기획처장, 학생서비스센터장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화상정보 취급시 주의사항)

-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.
-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(zoom-in)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.
-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. 다만, 「통신비밀보호법」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.

- ④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하지 않는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.
 - 1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 - 2. 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되는 경우: 도난 피해자가 정보열람 요청시 열람 확인서 작성 후 열람 가능하며 관리부서에서는 익일오전 결재를 득한다.
 - 3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- 4. 신문·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 - 5.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- 6. 범죄의 수사과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 - 7.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⑤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.
- ⑥ CCTV에 의하여 수집·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허가된 최소한의 인원수로 제한한다.
- ⑦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.
- ⑧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·누출·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·관리적 안전 조치를 강구한다.
- ⑨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.

제5조(열람 등의 요청)

- ①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·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하여야 한다.
 - 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- 2.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 - 3.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 - 4.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제6조(기타사항) 안내판 설치 :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